

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(제31조의2관련)

공사별	세부공종별	하자담보 책임기간
1. 교량	①경간장 50m이상 또는 연장 500m이상 교량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	10년
	②연장 500m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	7년
	③교량중 ①·②이외의 공종(교면포장, 이음부, 난간 시설등)	2년
2. 터널	①터널(지하철 포함)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	10년
	②터널중 ①이외의 공종	5년
3. 철도	①교량·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	7년
	② ①이외의 시설	5년
4. 공항·삭도	①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	7년
	② ①이외의 시설	5년
5. 항만·사방간척	①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	7년
	② ①이외의 시설	5년
6. 도로	암거·측구포함	2년
	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	10년
7. 댐	② ①이외의 시설	5년
	8. 상·하수도	①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
②관로 매설·기기설치		3년
9. 관개수로·매립		3년
10. 부지정지		2년
11. 조경	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	2년
12. 발전·가스 및 산업설비	①철근콘크리트·철골구조부	7년
	② ①이외의 부분	3년
13. 기타토목공사		1년
14. 건축	①대형공공성 건축물(공동주택·종합병원·관광숙박시설·관람집회시설·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)의 기둥 및 내력벽	10년
	②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이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	5년
	③건축물중 ①·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	1년
15. 전문공사	①실내의장	1년
	②토공	2년
	③미장·타일	1년
	④방수	3년
	⑤도장	1년

⑥석공사·조적	2년
⑦창호설치	1년
⑧지붕	3년
⑨관금	1년
⑩철물(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)	2년
⑪철근콘크리트(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)	3년
⑫급배수·공동구·지하저수조·냉난방·환기·공기조화·자동 제어·가스·배연설비	2년
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	3년
⑭⑫·⑬이외의 건물내 설비	1년
⑮포장	2년